



의안번호

제68호

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구본선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20. 6. 15.

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68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15.

대표발의자 : 구본선

공동발의자 : 박승용 김만중

조배식 박영자

조용훈 차경선

1. 제안이유

- 논산시의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7조의 제목 변경
 -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⇒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
-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내용 추가(안 제7조)
 -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에 한정하여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이나 논산사랑지역 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군부대 및 육군훈련소 헌혈자는 제외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개정조례안 : 별첨
- 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3) 입법예고 : 2020. 6. 15. ~ 6. 19.(5일간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)” 을 “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에 한정하여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이나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군부대 및 육군훈련소 헌혈자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안자	논산시의회 의원	구본선 의원 외 6인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)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에 한정하여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이나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군부대 및 육군훈련소 헌혈자는 제외한다.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헌혈자 지역상품권 지급
- 관련 조문 : 본 조례안 제7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헌혈자 지역상품권 지급 : 1회 1만원

나. 추계결과(5년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세출	일반회계	15,000	30,000	30,000	30,000
산출 기초	헌혈자x 1회 지급액	1,500명x 10천원= 15,000천원	3,000명* 10천원= 30,000천원	3,000명* 10천원= 30,000천원	3,000명* 10천원= 30,000천원	3,000명* 10천원= 30,000천원	

다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		시비(지방세)	15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 입							
시 비							
세 출		15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35,000
일반운영비		15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35,000
재원 조달		15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35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5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35,000
	지방세	15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35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▣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▣ 혈액관리법

제4조(헌혈 권장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.

▣ 혈액관리법 시행령

제2조(헌혈의 권장)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